

##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안내 변경공고

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발암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1일

### 사 천 시 장

#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0. 12.
- 사업비 : 1,104,350천원(철거 928,800, 지붕개량 106,750, 비주택 68,800)
- 사업량 : 335개소(철거 270, 지붕개량 25, 비주택 40)
- 지원대상 :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
  - ※ 기존에 지원 받은 건축물 소재지(지번)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불가
- 사업구분 및 사업대상, 지원금액
  - 주택 슬레이트 철거
    - 대상 : 주택부지 내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
    - 지원금액 : 최대지원금 3,440천원/개소 (23천원/㎡)
  -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

- 대 상 : 자가 주택 소유자로서 슬레이트 철거대상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취약계층의 지붕개량 (단, 슬레이트 지붕을 S골 칼라강판으로 개량 제한)
- 지원금액 : 최대지원금 4,270천원/개소
  - ※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자부담 지원

#### -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

- 대 상 : 주택부지 외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
- 지원금액 : 최대지원금 1,720천원/개소 (23천원/m<sup>2</sup>)
  - ※ 예외, 축사는 최대지원금 3,440천원/개소 (23천원/m<sup>2</sup>)
- 철거 등의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및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처리비용 자부담

## 2. 신청 및 접수

- 신청자 :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(건축주)
- 접수기간 : 2020. 1. 14(화) ~ 2020. 2. 28(금)
  - ※ 사업비 잔액 발생 시 대상자 추가 접수
- 접수처 : 건축물 소재 읍·면·동 행복복지센터
- 구비서류
  - 1)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.
  - 2)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.
  - 3) 소유권(건축물 대장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주소의 재산세 등 영수증 첨부) 1부.
  - 4) 슬레이트 처리동의서 및 관계 증명서(신청자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) 각1부.

5)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취약계층 확인 서류 1부.

※ 해당 시 각 서류 첨부

### 3. 지원 우선순위

#### ○ 슬레이트 철거

①기초수급자 ⇒ ②차상위계층 ⇒ ③기타 취약계층 ⇒ ④일반접수순

※ 주택 개량과 관련 타사업(지붕개량, 빈집정비, 새뜰마을사업 등)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우선

#### ○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

①기초수급자 ⇒ ②차상위계층 ⇒ ③기타 취약계층

### 4. 기타(사업신청) 유의사항

○ 건물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서명 또는 날인

○ 신청인이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·철거 시 보조금 지원 불가

○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. 사업취소자, 포기자는 다음 년도 사업참여 제한

※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천시 읍·면·동 행복복지센터, 환경사업소 슬레이트담당(☎831-5596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